

## 필리핀과 태국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안내

관세청은 '21.12.06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합의한 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C/O 사본 인정 조건 및 태국의 해당 조치 연장 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배경

-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 도출

### II. 주요 내용

#### 1. 필리핀의 C/O 사본 인정 조건

- 수입 후 30일 이내 원본 C/O를 보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아세안 FTA C/O의 스캔 사본을 인정

#### 2. 태국의 C/O 사본 인정 연장

- 해당 조치는 한-아세안 FTA, RCEP 등 태국이 체결한 FTA에 적용되며, '22.09.30.까지 연장

- \* 태국의 경우 통관 후 30일 이내 C/O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원본 제출 기한 마감 7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추가 연장 가능(최대 60일)
- \* 원본 미제출 시 세액 차액, 가산세, 벌금 등 추징

### III. 필리핀·태국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제출 시 조건

FTA	원산지 규정 관련 조치	국가	내용
한-아세안	C/O 사본	필리핀	· 한-아세안 FTA C/O의 스캔 사본 인정 단, 수입 후 30일 이내 원본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태국	· C/O의 스캔 복사본 인정 단,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 2022년 09월 30일까지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조건

####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하현준 관세사

T 070-4353-1514  
E hjha@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